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577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 명시	2

I. 개요

1.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57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헌승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2. 28.

(3) 회 부 일 : 2025. 3.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위반행위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정지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에 과징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징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 기관의 예측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6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 명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발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u>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7조¹⁾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의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의2²⁾에서는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의4.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3의5.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 3의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³⁾에서는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액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37조의2제1항에서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3)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이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운 경우

1)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내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시설급여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급여 제공기관(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구 단위로 한다.

2) 자치구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읍·면·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읍·면·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재가급여 제공기관(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시·군, 행정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 단위로 한다.

나. 시설급여제공 기관으로서 1등급 수급자가 전체 현원의 20%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다만, 30인 이하 소규모요양시설 및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이 5인 이상이거나 전체 현원의 30%이상이어야 한다.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나.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초로 적발된 위반행위로서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법인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인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담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마. 업무정지명령을 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별표 2]⁴⁾⁵⁾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유형 및 연간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5만 5,000원에서 1,159만원까지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총 부당청구금액의 2~5배를 과징금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⁶⁾에서는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①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 부과 기준)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5)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참고자료」 과징금 부과 기준' 참조

6)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기본법」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간격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사유 등으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청⁷⁾은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하위법령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및 기준이 없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⁸⁾, 지자체별로 분할납부 횟수 등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분할납부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대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업무집행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 분할납부의 근거를 명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⁹⁾

7)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8)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자체들은 과징금 부과시 분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분할납부 요청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분할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9) 국민권익위원회,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의안번호 제2024-657호), 2024. 12. 9. 의결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행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서 분할납부 기간을 ‘12개월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¹⁰⁾, 「의료급여법」¹¹⁾ 등에서도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12개월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분할납부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할 경우 과징금 부과를 통한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점, 현행법 시행령에서 장기요양기관별 연간 총 수입금액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차등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영세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10)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1.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11) 「의료급여법」 제29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에서 같은 법 제29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권자인 지자체가 이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현재 각 지역에 설치된 장기요양기관 수는 약 3만개소로 지역 내 수급자의 규모, 이용현황 등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 등 운영관리는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역 및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사정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을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자체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로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예외적 조치를 할 것인지, 분할납부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도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법에 일률적인 분할납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503

[참고자료] 과징금 부과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과징금 부과 기준(제15조 관련)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제2호·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3호의4·제3호의6·제3호의7·제5호·제6호(제6호의 경우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
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하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이하 같
다)에 다목의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장기요양기관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그 장기요양기관의 연간 총 수입금액별로 정한 업무정지 1일당 과징
금 금액으로 한다.

등 급	연간 총 수입금액(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천원)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에 따른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재 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55
2	20 초과 30 이하	20 초과 3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이하	90
3	30 초과 40 이하	30 초과 40 이하	30 초과 40 이하	30 초과 40 이하	130
4	40 초과 50 이하	40 초과 50 이하	40 초과 50 이하	40 초과 50 이하	160
5	50 초과 60 이하	50 초과 60 이하	50 초과 60 이하	50 초과 60 이하	200
6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230
7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260
8	80 초과 90 이하	80 초과 90 이하	80 초과 90 이하	80 초과 90 이하	300
9	90 초과 10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330
10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350
11	120 초과 14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410
12	140 초과 160 이하	140 초과 160 이하	140 초과 160 이하	140 초과 160 이하	460
13	160 초과 180 이하	160 초과 180 이하	160 초과 180 이하	160 초과 180 이하	530
14	180 초과 200 이하	180 초과 200 이하	180 초과 200 이하	180 초과 200 이하	591
15	200 초과 3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778
16	300 초과 4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1,090
17	400 초과 5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1,400
18	500 초과 6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1,710

19	600 초과 700 이하	600 초과 700 이하	600 초과 700 이하	600 초과 700 이하	2,030
20	700 초과 800 이하	700 초과 800 이하	700 초과 800 이하	700 초과 800 이하	2,340
21	800 초과 900 이하	800 초과 900 이하	800 초과 900 이하	800 초과 900 이하	2,670
22	900 초과 1000 이하	900 초과 1000 이하	900 초과 1000 이하	900 초과 1000 이하	2,960
23	1000 초과 1200 이하	1000 초과	1000 초과 12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3,440
24	1200 초과 1400 이하		1200 초과 1400 이하	1200 초과 1400 이하	4,020
25	1400 초과 1600 이하		1400 초과 1600 이하	1400 초과 1600 이하	4,680
26	1600 초과 1800 이하		1600 초과 1800 이하	1600 초과 1800 이하	5,300
27	1800 초과 2000 이하		1800 초과 2000 이하	1800 초과 2000 이하	5,880
28	2000 초과		2000 초과	2000 초과 2200 이하	6,620
29				2200 초과 2500 이하	7,280
30				2500 초과 3000 이하	8,560
31				3000 초과	11,590

비고

- 총 수입금액은 장기요양사업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금액과 수급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금액의 합계로 한다.
 - 연간 총 수입금액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 개설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초로 연간 총 수입금액을 산출한다.
 - 과징금 부과 대상 장기요양기관이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두 종류 이상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먼저 그 각각의 연간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과징금을 산정한 후, 그 각각의 과징금을 합하여 해당 과징금 부과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총 금액을 산정한다.
2.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별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구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비용(이하 "부당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
 -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3배
 -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4배
 -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당금액의 5배